

제138회 거창군의회의  
<임 시 회>

# 조 례 안 상 정

(조 례 5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7 ~ 1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 ~ 1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 ~ 13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3
2007 ~ 14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7 ~ 1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11
----------	-----------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의 원활한 보건업무의 추진과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전담기구(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제112조

나.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 일반직 7급 중

- 보건소 : 15명 ⇒ 14명(감1)      - 본청 : 81명 ⇒ 82명(증1)

다.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 일반직 8급 중

- 사업소 : 9명 ⇒ 8명(감1)      - 본청 : 49명 ⇒ 50명(증1)

라. 혁신분권업무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안 부칙제2항)

- 존속기간 : 2007. 6. 30까지 ⇒ 2008. 6. 30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생략(예산과 다수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하고,  
“거창군(이하 “군” 이라한다)”를 “거창군”으로 한다.

제2조 중 “군에”를 “거창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6급3명, 7급3명, 8급2명)중 2명(사업별예산제도 업무 : 6급1명, 7급1명)은 2007년 12월 31일, 3명(혁신분권 업무 : 6급1명, 7급1명, 8급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3명(복식부기업무 : 6급1명, 8급1명, 일제강점하피해조사 : 7급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거창군</u>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u>군</u>에 정원의 총수는 6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 ----- -----<u>거창군</u> ----- -----.</p> <p>제2조(정원의 총수) <u>거창군</u>----- -----.</p>

[별표]

##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3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80	<b>271</b> (269)	14	<b>133</b> (134)	61	<b>72</b> (73)	<b>59</b> (60)	45	158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계	534	<b>223</b> (221)	8	<b>77</b> (78)	23	<b>54</b> (55)	<b>39</b> (40)	40	147
	4급	2	1	0	1	1	0	0	0	0
	4~5급	2	1	0	1	0	1	0	0	0
	5급	32	12	3	2	1	1	3	1	11
	6급	143	64	3	10	5	5	10	12	44
	7급	165	<b>82</b> (81)	2	<b>24</b> (25)	10	<b>14</b> (15)	12	12	33
	8급	127	<b>50</b> (49)	0	35	5	30	<b>8</b> (9)	10	24
	9급	63	13	0	4	1	3	6	5	35
별정직	소계	17	1	0	16	0	16	0	0	0
	6급	1	1	0	0		0	0		
	6~7급	16	0	0	16		16	0		
연구사	4	1	0	2	2		1			
지도직	소계	32	0	0	32	32	0	0	0	0
	지도관	2	0	0	2	2				
	지도사	30	0	0	30	30				
기능직	소계	92	45	6	6	4	2	19	5	11
	6급	3	1	0	1	0	1	1	0	0
	7급	9	3	1	2	1	1	3	0	0
	8급	14	2	2	0	0	0	3	1	6
	9급	28	19	1	1	1	0	5	1	1
	10급	38	20	2	2	2	0	7	3	4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12
----------	-----------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2006.12.15.경상남도로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게 확대 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 제112조부터 제120조
- 나. 산림환경과장 분장사무 추가(안 제3조제2항제9호)
-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지소, 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안 제11조제2항, 안 별표 1)
- 상하수도사업소 :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 1153번지
  - 고제면 보건지소 : 고제면 농산리 200-1번지 ⇒ 754-1번지
  - 강천 보건진료소 : 웅양면 산포리 1418-2번지 ⇒ 1387-36번지
- 라.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안 별표 1)
- 1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기준 : 인구 500인 이상
  - 14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
    - 거기, 강천, 개명, 소정, 월성, 모전, 고향, 율리, 임불, 진목, 지산, 대현, 용암, 중촌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 「지역보건법」 제10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나. 예산사항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생략(예산과 다수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거창군”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다만, 수탁받은 기간에 한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4조제1항과”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239-50번지”를 “1153번지”로 한다.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 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거창군----- ----- ----- ----- -----.</p>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 ----- ----- -----.</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략)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산림환경과장 가. ~ 바. (생략) <u>&lt;신 설&gt;</u></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산림환경과장 가.~바. (현행과 같음) <u>사. 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다만, 수탁기간동안에 한한다)</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및 농업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
제8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 ----- -----.
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상하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에 둔다.	제11조(설치) ①법 제114조----- ----- -----. ② ----- --1153번지-----.
제14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센터를 둔다.	제14조(설치) ①법 제114조----- ----- ----- -----.
제17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둔다.	제17조(설치) ①법 제114조----- ----- ----- -----.
제20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대관광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0조(설치) ①법 제114조----- ----- ----- -----.

[별표 1]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1번지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번지	주상면 일원
응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응양면 노현리 217-11번지	응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754-1번지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3번지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03-3번지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4번지	남상면 일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91-1번지	남하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87-5번지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42-8번지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887-3번지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10번지	거기, 장포, 고대, 원남산, 포덕동, 보광, 송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응양면 산포리 1387-36번지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노현
아주 보건진료소	거창군 응양면 신촌리 1418-2번지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구송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71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621-1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학림, 원궁항, 산양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39-6	중산, 소정, 개삼, 탑불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8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병곡
모전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3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황산 1,2구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13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신기, 시목, 엄대, 서편, 동편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율리 161-5	풍계, 상율, 월화, 영신, 학동, 성락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83-1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한산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155	춘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외등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6-4	자하, 신기, 장진, 천동, 대사, 오가, 대야, 가천, 용동, 월곡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70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중유, 예동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2-1	원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도리 1221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용암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885-1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공수, 박암, 옥산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72-1	심방, 회남, 중촌, 추동, 해평, 용산, 율리

##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13
----------	----------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균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2007. 4. 24 ~ 5. 15) 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대상 주민총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14
----------	-----------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2005. 7. 2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칭에 “ 「 」 ”를 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 (제명,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6조제2항, 부칙 제3항 및 제4항, 제2항)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2) : 붙임 『별표2』 참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7. 4. 11 ~ 4. 30)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각각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1992.2.13 조례 제1259호) 제3항 및 (1998.2.11 조례 제1467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1992.2.13 조례 제1259호) 제4항 중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u>	<u>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u>주차장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과 <u>주차장법 시행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한다)의 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주차장법</u>」 ----- ----- 「<u>주차장법 시행령</u>」 ----- ----- 「<u>주차장법 시행규칙</u>」 ----- ----- ----- -----</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 략) ②<u>도로교통법</u>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현행과 같음) ② 「<u>도로교통법</u>」 제2조제 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주차장의 표시는 <u>도로교통법</u>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교통안전 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②~③(생 략)</p>	<p>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 「<u>도로교통법</u>」 ----- ----- ----- ----- ----- ----- ----- ----- ----- ②~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u>도시계획법</u>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 략)</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 ----- 「<u>도시계획법</u>」 ----- ----- ----- ----- ----- ②(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요금의 감면) ①노상 및 직영 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p> <p>2.~4. (생략)</p> <p>②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p> <p>1.~3. (생략)</p>	<p>제9조(요금의 감면)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u>도로교통법</u>」 ----- ----- 2.~4.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3. (현행과 같음)</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생략) 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u></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u>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u></p> <p>②(생략)</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p> <p>3. -----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u>」 ----- ----- ----- 4. ----- ----- ----- 「<u>한국은행법</u>」 ----- ----- ②(현행과 같음)</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생략)</p> <p>②영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정기 주차권 요금(주, 야간)으로 한다.</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다만,</u>-----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1992.2.13 조례 제1259호)</p> <p>①~②(생 략)</p> <p>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u>건축법</u>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을 받았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④(다른 조례 개정) <u>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1992.2.13 조례 제1259호)</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경과조치)----- 「<u>건축법</u>」</p> <p>-----</p> <p>-----</p> <p>-----</p> <p>-----</p> <p>-----</p> <p>-----</p> <p>-----</p> <p>④(다른 조례 개정) 「<u>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p> <p>-----.</p>
<p>부칙(1998.2.11 조례 제1467호)</p> <p>①(생 략)</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u>건축법</u>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1992.2.11 조례 제1467호)</p> <p>①(현행과 같음)</p> <p>②(경과조치)----- 「<u>건축법</u>」</p> <p>-----</p> <p>-----</p> <p>-----.</p>

[별표 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1. 위락시설	1. 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80㎡당 1대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 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 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2. 문화 및 집회시설(관 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 리병원을 제외한다), 운 동시설(골프장·골프연 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주거 및 상업지역 : 시설면적 12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 적 150㎡당 1대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3. 현행과 같음	○주거 및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 적 200㎡당 1대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4가구 이상시 세대당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30㎡ 이하 : 1대 ○시설면적 130㎡ 초과 : 1대에 130㎡를 초 과하는 100㎡당 1대 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130 ㎡)/100㎡}]
5. 공동주택(다세대 주택·기숙사를 제 외한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면적 100㎡당 1대, 세대당 1대 중 많은 것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 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8가구 이상일 경우에 는 가구당 1대로하되 산정 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대수를 적용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6. 현행과 같음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 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 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현행과 같음
7. 기타 건축물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현행과 같음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

측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15
----------	-----------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
-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 임산부철분제 : 7개월분 이내
  -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 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10만원 범위내 전입기념품, 300만원 범위내 빈집정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전액, 50ℓ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10만원 범위내 전입대학생 장학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전액, 5매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등
  -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 마.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바. 지원금품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 (3)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및 확보 계획

- (1) 연간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2) 확보계획 :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7. 4. 4 ~ 4. 23) 결과 : 의견 없음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 등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 한다.
2. “산전진찰비”란 태아를 임신하여 분만 전까지 진찰(임부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3.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5.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6.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출산장려 지원

제4조(업무관장) 출산장려지원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5조(지원내용)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부 산전진찰비
2. 임산부 철분제
3.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용품
4.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모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②제5조제2호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제7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2. 임산부 철분제 : 7개월분(임신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
3.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4.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5.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②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부 산전진찰비는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2. 임산부 철분제는 매월 1개월분씩 7개월간 지급한다.
3.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한다.
5.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에 따라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3년간은 출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에 따라 100만원씩 지급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및 육아용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원대상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제2호 임신부철분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 등록 후 철분제를 수령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①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제3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제10조(업무관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③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만4세 셋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2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중단) ①읍·면장은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달의 양육비가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15조(업무관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

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자는 그 금액상당을 제외한다.

제17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의 중단) ①읍·면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6조제1항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분기의 학자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제5장 전입장려 등 지원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의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지원(행정과)

2. 전입세대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전입기념품 지급(행정과)
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
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종합민원실)
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장학금 지원(전략사업추진단)
7.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전략사업추진단)
8. 전입세대에 대한 5매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
9.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

## 제6장 보 칙

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을 협조, 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거창군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④협의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⑦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육아용품)

(접수번호: )

입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보호자)성명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④ 넷째아이 이상				
장려금 신청횟수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분만 및 진찰 병원		
주소 (전화번호)	☎ H·P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육아용품 10만원 상품권 지급 (원하시는 상품권에 √하세요.) ①모아베이비 ②베베양슈(해피랜드) ③아가방 ④알로앤루 ⑤기타(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읍·면 장 확 인</p> </div>						
200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귀    하						
<p>※ 첨부서류 : 산전진찰비 명세서 1부, 통장사본 1부</p> <p>※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아이 : 출생시 1회 전액 지원</li> <li>- 셋째아이 이상 : 4회 분할 지급(매회 신청서 작성·제출) (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거 200만원 지급, 그 후 1년마다 100만원씩 지급)</li> </ul> </li> <li>○ 육아용품 상품권 : 둘째아이 이상 지원(10만원 상품권)</li> <li>○ 산전진찰비 : 진찰비 명세서 첨부, 10만원 이내 지원</li> </ul>						



[별지 제2호서식]

##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HP:	
지 원 대상자 (영유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의 재 자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의 재 자녀			
입 금 계 좌	금 용 기 관		예금주		계좌 번호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거창군수 귀하</p>					
행 정 기 관 확 인 사 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직	성 명	확 인	
조례 제11조 제1항 적합 여부 적합(    ), 비적합(    )					

[별지 제3호서식]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 전입세대 학자금(    )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학학교	고등학교			학년		
	가족상황	관계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고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학자금을 신청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학자금납입영수증(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보호자) :                          (인)</p> <p><b>거 창 군 수 귀하</b></p>							
<b>행    정    기    관    확    인    사    항</b>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 고	
			직	성 명	확인		
조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0조 제7호 적합 여부 적합(    ), 비적합(    )							